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성현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 사업 추진(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조례안의 제정 목적(안 제1조), 적용 대상(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실태조사(안 제7조), 처우개선 등 사업(안 제8조)등 9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